

3. 度 支 志 解題

韓 治 励

近朝鮮 後期의 英祖·正祖時代는 안으로는 自我에 대한 새로운 反省과 批判의 潮流에서, 밖으로는 絶頂期에 오른 清朝文化의 影響에서, 精彩한 文運이 朝野間에 鬱然히 일어난 時期이다. 兩代의 右文政治가 그러한 新機軸을 마련하게 된 또 하나의 契機이기도 했다. 그러한 중에서도 특히 正祖는 스스로가 그 龙大한 弘齋全書(100冊)를 남길 만큼 好學崇文의 君主로서, 正祖朝에 王命에 依하여 編纂·刊行된 書籍만도 적지 않은 數에 達한다. 그 중에는 主要 官署의 諸般 事例를 謄載編錄하여 後日 考據의 資料로 삼으려는 目的에서 혹은 私撰으로 혹은 王旨에 따라 여러 官署志가 編纂되기로 했다. 正祖 3년의 南漢志, 正祖 5년의 春官志·秋官志·正祖 8년의 奎章閣志·弘文館志, 正祖 9년의 太學志等은 다 그러한 作業의 成果였다. 本 度支志는 實로 이 같은 公私 編纂事業의 뒤를 이어서 마련된 것이다.

度支志에 關해서는 弘齋全書(卷 183) 群書標記(五) 命撰(一)에서 그것이 春官通考 章節彙編과 더불어 戊申(正祖 12年 1788)에 承命編纂되고 編次者는 度支郎朴一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度支志 22卷 寫本」으로 되어 있다.

度支志라는 書名에 關해서는 上記 標記에서

論者 以今之度支 爲古之地官…

其爲有國之重 抑亦天官之流亞也

라하여 度支는 옛날의 地官을 이름이오, 그 源流는 古代 中國에서 淵源되었음을 말하고 我國에서는 唐·宋制를 取倣하여 版籍·會計·經費의 三司를 두어 各其 事務를 分掌케 하되 戶曹가 이들을 總管케 하여 利權歸一의 實을 거두게 했음을 說明한 끝에

是書之不曰地官 而必曰度支 所以識實也

라하여 冊名을 地官志라 하지 않고 度支志라한 理由를 밝혔다. 또한 本 度

支志 卷首 凡例에서도 書名 釋義에서

度支之名 始見於曹魏之時 度用支費之謂也 志者 記其故實之謂也

라하여 度支志는 즉 戶曹의 度用支費의 故實을 編錄한 것임을 明記하고 있다.

그러나 本書는 上引 弘齋全書 標記에서 말한 바 正祖 12年 戊申에 朴一源이 承命編次한 바로 그 草稿本은 아니다. 이에 關해서 우리는 正宗實錄(卷) ⁽⁴⁵⁾ 正祖 20年 7月 辛亥條에서 這間의 消息을 엿볼 수가 있다. 즉 正祖가 戶曹判書 李時秀에게

度支志 則朴一源爲郎官時所編 卿曹有謄本否

라고 묻는 말에 李時秀는

沈頤之爲戶判時 與計士之解事者 作爲三卷冊子 備載度支法例 臣方謄出而朴一源所編 臣未得見矣

라하였다. 이로서 正祖는

朴一源所編 必在於其家 亦繕寫一件 置於卿曹 好矣 且其人能文 後人雖作之 必不如矣 故判書金魯鎮 與郎官朴一源所編秋官志 曾一取見 可謂善編 其後可以續入者 增輯繼成 則可以刊行 以備故實矣

라했다. 즉 戊申年に 承命編纂된 朴一源의 度支志는 戶曹判書 李時秀도 이에 得見한 바 없으며 따라서 그것이 繕寫되어 戶曹에 備置되었던 것 같지도 않으나 正祖는 朴一源所編의 度支志가 朴一源家에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이를 繕寫하여 戶曹에 備置하도록吩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實際 春官志·秋官志等 官署志도 當初에는 私撰으로 엮어진 것이 뒤에 王旨에 依하여 增補·編纂되었거니와, 度支志는 正祖 12年 戊申에 朴一源이 承命編纂하였으되 그 增補·完成을 爲하여 私家에 保藏되어온 듯 싶으며, 그것이 上覽에 供했던 것인지는 確實치 않으나, 正祖는 이같은 事由를 알고 있어 命撰 8年後에 朴一源家藏의 草稿本을 一件 繕寫하여 戶曹에 備置토록 判書에 命한 것이었다. 그것이 언제 繕寫되어 戶曹에 備置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奎章閣所藏인 本 度支志는 朝鮮白紙(蜀紙)에 墨書로 精書한 筆寫本으로 上述한 바로서 아마도 正祖 20年 王旨에 依하여 朴一源所編의 度支志를 그대

로 繕寫한 것임에 틀림없다.

承命編次者인 朴一源에 關하여서는 그가 刑曹正郎으로 刑曹判書 金魯鎮의 指示에 따라 秋官志를 編纂한 經驗이 있었고 인제 다시 度支郎(戶曹郎官)으로 實務職에 歷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能文이 높이 評價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正祖도 그의 所編인 秋官志를 取見하고 「可謂善編」이라 했고 또 度支志에 대하여서는 그 以上의 編纂을 後日에도 期待할 수 없다고 하리만큼 그가 度支志編纂에 가장 適任者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 밖의 朴一源의 經歷이나 人品에 關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더 알 수가 없다.

本 度支志의 編次(總目次)는 크게 内篇·外篇으로 2分하고, 内編 官制部에서는 다시 戸曹·屬司·職掌·吏隸·廩祿·館舍·雜儀·古蹟·事例의 9目으로 나누었고, 外篇은 版籍司·會計司·經費司의 3部로 나누고 그 밑에 각기 版圖·田制·漕轉·財用·貢獻의 5目, 倉庫·糴糲·解由의 3目 및 五禮·經用·料祿·荒政의 4목으로 나누고 있어 總 21項目으로 區分되었다. 이와 같은 編次·分目の 原則은 마치 秋官志에서 天文說에 依據하여 十干·二至·五運·四時·三元에 따라 總 24項目으로 分目했음에 대하여, 度支志는 地形說에 依據한 것이었다. 즉 本 度支志 總目 序文에 이 點에 關하여

地官之書 宜象地 道分而爲九土 別而爲三壤 峙而爲五嶽 流而爲四瀆者 地之形也 官制之九目 象之九土也 版籍之五目 象五嶽也 會計之三目 象三壤也 經費之四目 象四瀆也 內外篇之合爲十卷 亦象地數之成於十也

라하여 官制以下를 각기 九土·三壤·五嶽·四瀆에 對備하여 總 21項目으로 編次하고 그위에 本書를 10卷(冊)으로 成冊한 理由를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本書는 10冊 21卷으로 되어 있으나 1項目 1卷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弘齋全書 上記 標記에 「度支志 22卷」으로 되어 있음은 誤記가 아니면 혹은 繕寫時에 改編된 것이 아닌가 憶測된다. 그 위에 標記의 編次에서는 官制 밑에 戸曹가 빠져서 8目으로 되어 있어 上記한 바 本書 總目 序文의 「道分爲九土 官制之九目 象之九土也」云云에는 符合되지 않아 이 亦是 繕寫時에 改編된 것이 아닌가 推測되는 바이다. 그 밖에 本書 總目과 다른 것은 會計司의 倉庫가 倉廩으로 되어 있는 點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本書 編次에 있어서 官制·版籍·會計·經費를 각기 地形說에 따라 分目하여 總 21 項目으로 區分함에는 實際 編次 内容에 있어 無理가 隨伴되었던 것 같다. 인제 本書의 内容을 살펴 보아도 그 體裁와 内容이 本書의 總目과도 完全히 符合되지가 않는다. 먼저 第一冊은 總 103 葉으로 凡例(2葉)·度支志總目(2葉)·本衙全圖(1葉)에 뒤이어 度支志總要로서 八道三都田民錢穀總數(6葉)·版籍司一年捧下總要(4葉)·雜物色一年捧下總要(2葉)가 收錄되어 되어 凡例·度支志總目·度支志總要의 葉數順番이 각기 따로 매겨져 있다. 여기에 이어서 卷之一目錄(1葉)이 收錄되고 다음부터 卷之一 官制部가 시작되어 内篇 官制部는 第1冊 1卷으로 充當되었다. 第2冊에서는 每冊 2卷乃至 3卷으로 되어 되어 卷別로 葉數順番이 매겨졌음에 대하여 卷之一에서만은 戶曹·屬司·職掌·吏隸·廩祿·館舍(19葉)雜儀·古蹟(8葉)事例(各房式例)等 記帳의 葉數順番이 각기 따로 매겨져 있는 것이다. 즉 卷之二以後의 卷別 葉數順番記載方式은 卷之一에서는 직혀져 있지 않다. 이것은 端的으로 體裁上의 統一을 期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또한 1卷의 平均葉數는 43葉(2卷)으로 卷 十六(五禮部)의 88葉이 最高로, 卷 十一(貢獻部)의 17葉이 最下로 되어있어 卷一의 戶曹一館舍(19葉)와 雜儀·古蹟(8葉)部分 그리고 事例(各房式例)部分은 内容上·分量上으로도 分卷하여 2卷으로 編次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 위에 本書에 總目에서는 會計司에 「會計之三目 象三壤也」라 해서 倉庫·糴糴·解由의 3目으로 區分·編次된 것으로 記載되어 있으나, 實際 内容에 있어서는 第6冊 卷之十二 目錄에서와 같이 會計司 밑에 倉庫部(12葉) 解由部(6葉)만으로 되어 總目에서와 같이 糴糴部가 設定되어 있지 않고 다만 倉庫部 末尾에 還耗(式例 1葉, 事實 1葉, 儲置米 1葉)條로 極히 簡略하게 添記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編次內容에 있어서나 그 體裁에 있어서 未備한 것은 미처 그 編纂이 完成되지 못했던 朴一源의 草稿本을 그대로 繕寫成冊한데서 緣由된 것이 아닌가 推測케 하는바이다. 그러므로 또 繕寫時에 改編되었을 可能性도 있어 혹은 이로 말미암아 上述한 바와 같은 卷數의 蹤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度支志 編纂의 目的是 이미 本書 凡例 釋義에서 본 바와 같이 戶曹의 諸般

事例・故實을 編錄하여 後世의 參考資料로 삼자는 것이었다. 上記 弘齋全書의 標記에서도

曹舊無志 所取爲藍本者 不越於胥吏簿書 故文不厭繁 例不嫌糲 蓋草創而未潤色者也 然收攬既博 細大不遺 亦足以資考据矣

라하여 本書 編纂의 基本이 된 資料는 �胥吏의 簿書에 지나지 못하나 되도록廣範하게 資料를 取擇하여 足히 考据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인제 本書의 內容에 關하여 可及的 綿密한 檢討를 해보기로 한다. 먼저 記載方式에 대해서는 本書 凡例 逐段條에서 각기 細項目에 대하여 「먼저 傳敎를 首錄한 것은 王言을 尊重함이오 다음에 節目을 收錄하여 條例를 詳細히 하고 末尾에 事實을 收錄하여 그 源委를 밝혔다」고 한 듯이 대체로 傳敎・節目・事實의 順次로 逐段・敘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本書의 編纂主旨가 戸曹의 事例를 謄載編錄하는데 있어 戸曹의 事例 또는 式例, 이와 關聯되는 諸般 節目等 여러가지 格式・規制와 戸曹의 現況・所管事務內容等이 主가 되고, 여기에 이들과 關聯되는 傳敎를 首錄하여 歷代 王旨의 所在를 밝히고 또 事實(故)을 末尾에 添記하여 그 源委를 밝혀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上記 凡例 逐段條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各細項에 있어서 傳敎・節目(또는 式例)・事實의 敘述形式을 갖춘 項目은 總 110 餘條의 細項目中에서 대체로 30 項目에 지나지 않는다. 卷之一의 官制部 全項目에서나 卷之二 版圖部의 道里・疆域條等에서와 같이 傳敎나 事實이 1 件도 收錄되지 않은 것이 있으며 흔히는 그 중의 어느 하나가 缺해 있기도 하고 또는 水車・測雨器條(卷之三) 柴場・牧場條(卷之四)等과 같이 다만 事實만이 記載되어 있는 것도 10餘條項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本書의 主要內容인 戸曹의 諸般事例・式例나 戸曹의 現況에 關한 記錄은 一一히 摘記・解說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럴 必要도 없겠다. 그러한 중에서 統計的인 資料를 提供해주는 몇 가지 條項을 例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市廛收稅式例・各廛數目(有分・無分各廛)

中江・會寧・慶源公市總數

方物(冬至・聖節・奏請・謝恩)

京外戶口總數

(以上 卷 2)

各道田結總數 · 宮房衙門屯田總數	
東西籍田 · 各道堤堰總數	(以上 卷 3)
京衙門免稅總數 · 諸宮房免稅總數	(以上 卷 5)
米租布會錄數爻 · 軍作米會錄數爻	
隱餘結稅穀數爻 · 選武軍官數爻	
結錢數爻 · 漁鹽船稅錢數爻	
各道各衙門給代數爻	(以上 卷 8)
貢物(別賀) · 別賀作等(廬 · 契)	
貢弊	(以上 卷 10)
奴婢總數	(卷 11)
逐朔料祿(百官科料)	
一年料祿支放總數	(以上 卷 19)

玆한 本書 諸項에 收錄된 諸般 節目은 備邊司瞻錄에서 또는 따로 成冊된 것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 社會經濟部面 研究에 好適의 資料가 되는 것임으로, 이들 節目을 여기에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節目題名中の() 내의 것은 筆者가 補充한 것이며 年紀는 節目制定年代를 表示함.

城役節目	英宗 27年	卷 2
各廬(收稅)數目	"	
(親耕)節目	英宗 15年	卷 3
(親蠶)御定節目	英宗 43年	"
(勸農)節目	肅宗 13年	"
備局堤堰別單	英宗 8年 正月	"
量田節目	世宗 27年	卷 4
(量田)遵守冊	孝宗 4年	"
陳田降續條件	英宗 35年	"
備局禁耕節目	肅宗元年	"
宮結(收稅)節目		卷 5
(檢田)節目	仁祖 25年 (戶曹啓目)	"
	肅宗元年 (備局啓目)	卷 6
兩湖(漕)船節目	肅宗 30年 (釐正廳 變通啓下)	卷 7
湖南(漕船)改節目	英宗 47年	"
湖西(漕船)改節目	正宗 5年	"
嶺南船節目	英宗 41年	卷 7
(鑄錢)節目	英宗 7年	卷 8
邊邑禁錢節目	孝宗 10年	"

漁鹽(稅)節目	肅宗 16年	卷 8
煮鹽節目, 瑞泰節目	仁祖 16年	"
靈羅節目	仁祖 18年	"
蒜山節目	英宗 21年	"
附改節目	英宗 36年	"
船稅節目	景宗 4年	"
宣惠廳節目(京畿廳, 湖西廳, 湖南廳, 嶺南廳)		卷 10
江原道大同詳定節目	英宗 30年	"
海西詳定節目	肅宗 36年	"
貢幣釐正節目	景宗 4年	"
應辦節目	英宗 29年	"
(驛奴婢)節目	肅宗 10年	卷 11
(三手米)節目		卷 15
軍布作米節目	英宗 10年	"
流丐人救活事目	肅宗 21年	卷 20
字恤典則事目		"
常平廳節目		"
咸鏡道吉州以北各邑交濟倉節目	英宗 30年	"
諸道減役事目別單	仁祖 15年	卷 21
減稅節目		"

그러면 다음에 各項目에 首錄했다는 傳敎의 內容은 어떤한 것인가. 實際로 傳敎가 收錄된 것은 總 110 餘項目중에서 41項目이며 1項目에 있어서 朝鮮王朝 歷代 王의 傳敎중의 1件 乃至 數件이 摘記되어 있다. 그리하여 宣祖朝 以前의 傳敎는 少數이고(太祖 2件, 太宗 1件, 世宗 7件, 文宗 1件,) 英宗·正宗의 傳敎가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歷代 王의 傳敎가 比較的 많이 (5件) 收錄된項目으로는 勸農·漕轉·敗船·錢貨·御供·貢物·吉禮·凶禮·支勅·荒政·發賣·蠲減·賙恤等 諸條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凡例에서 明記한 바와 같이 「列聖의 傳敎는 萬世의 章程으로 1字라도 移易하는 것은 不當하나 實錄記載에서도 從簡하는 것임에 그 規에 따라서 略加刪節하여」 收載한 것이다.

또한 各項 末尾에 收錄된 事實도 그 거의 全部가 朝鮮王朝時代의 故實로서, 그러한 중에서도 傳敎에 있어서와 같이 宣祖朝 以前의 것은 極히 零星하

고 흔히는 仁祖朝以後의 것이 많이 收錄되어 있다. 但 王都·彊域條에서는 그 項目的 内容性格上 古代三韓時代로부터 簡略히 起論되어 있고 奴婢事實에서 箕子八條敍가, 科田條에서 高麗文宗朝 田柴科가 言及된 것은 數三의 特例에 不過하다.

위와 같은 傳敍와 事實等 本書의 内容에서 時期의 下限線이 正宗 11年에 이르고 있으며 그 以後의 記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같은 事實은 本書가 正祖 12年(戊申)에 朴一源이 編纂했다는 事實과도 符合되고 또 그 뒤에 새로 增補된 흔적도 없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겠다.

本書 編纂에 있어서 實際的인 便宜가 配慮되고 實證的인 態度를 堅持하여 從來 因習의으로 依倣하던 記述上의 몇 가지 舊弊를 一新한 바 있는 點은 特記할만 하다. 그러기에 또 本書 凡例에서도 이를 明白히 한 것이기도 했다. 그첫째는 紀年에 關한 것으로 編者는 「春秋之書에는 모두 魯公紀年을 썼고 우리나라에서는 公私書籍에 모두 中國의 年號를 썼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某朝某年을 上考하려면 眇疑스러우므로 삼가 春秋의 法을 遵守하여 我朝의 編年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紀年法은 秋官志에서 使用된 것 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主體的인 自我意識의 한 表現이라고도 볼 수 있음직하다. 다음에는 人物에 대한 官職과 姓名에 關해서도 종래에는 實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罪人去官者는 姓을 記錄하지 않고 또는 大臣·道臣과 아울러 所屬曹의 判書의 姓名은 該曹 文簿에서는 흔히 記姓하지 않거나 或은 姓만 쓰고 名을 記載하지 않았던 것이나, 이 같은 일은 모두 徵信·考據에 不便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本書에서는 官職名은 이름밑에 細書로 밝혀 두고 姓名에 대해서는 博考하여 알 수 있는 者는 이를 錄하고 알 수 없는 者는 2字를 姉闊하여 두어 後人の 補墳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끝으로 本書의 内容을 이룬 全項目에 대하여 一一히 略解를 붙인다는 일은 지나치게 煩鑽하여 이는 避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本書 每冊 卷首에 卷別 目錄이 收錄되어 있으나 실제 内容에 들어서는 細大項目의 區別이 없이一律의으로 件別題名이 3字格下 別行으로 提示되어 있어 全體의 編次 細目을 分別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既述한 바와 같이 會計司 耽羅(部)은

總目 21 個項目중의 하나로 되어있으나 실제 内容에 있어서는 還耗로서 倉庫部에 添記되어 있음과 같아서, 内容에 있어서의 題名이 總目・卷別目錄과도 반드시 一致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本書의 内容細目에 對하여서는 그 大小項目을 가려서 綿密한 内容目次를 整理・提示하는 일이 本書의 内容細目을 解說하는一半의 作業이 될 것이므로 다음에 内容目次를 提示함으로써 그 煩鎖한 作業에 대신하고자 하는 바이다.

戶曹에 關係되는 主要한 文獻으로서 英祖 27 年(1751)의 度支定例가 있고 憲宗朝의 것으로 推定되는 度支田賦考等이 있다. 前者는 政府各司와 各宮所屬의 諸房司에 進排되는 物種과 그 年間進排數量을 恒定한 것이며 後者는 正祖朝以後 憲宗朝에 이르는 時期의 田結과 收稅關係의 統計冊이다. 本 度支志는 正祖朝의 戸曹의 實況, 그 所管의 諸般 事例를 直接的으로 理解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上記 度支定例나 度支田賦考와 아울러 李朝後期 社會經濟史研究에 必須의 資料가 될 것이다. 本 度支志가 「서울大學校古典叢書」중의 하나로 影印케 된 것을 기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1967 年 1 月

<筆者：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教授>